

의안번호	2204290
의 퇴 인	이언주 의원
회 답 일	2024. 11. 25.
추 계 번호	24B4090

생활화학용품 피해배상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의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생활화학용품 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 6,000만원(연평균 7,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4조)	45	45	45	45	45	225	45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2조)	18	18	18	18	18	90	18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 재심사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5조)	9	9	9	9	9	45	9
계	72	72	72	72	72	360	72

주: 1.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는 국민이 생활화학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과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시책과 피해자 구제에 관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구역 내 피해자 실태파악 및 피해자 관리 등에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4조(피해자단체)	생활화학용품피해자와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이하 “피해자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음(제1항)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자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3	안 제10조(구제급여의 지급 등)	구제급여¹⁾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제1항) 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함(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구제급여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2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 피해구제기금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함(제3항) 구제급여의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의무규정
4	안 제12조(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청 등)	제9조제1호·제2호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인정(이하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제1항)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6항) 제2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절차·방법, 제4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의료수첩의 서식, 제6항에 따른 지원조건·금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제7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1)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5	안 제14조(생활화학 용품피해 판정위원 회)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 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1. 생활화학용품질병 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에 관한 사항 3.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의 갱신 또는 철회에 관한 사항 4. 특별유족인정에 관한 사항 5. 제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열람에 관한 사 항 6. 그 밖에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1. 환경의학자 2. 환경 전문가 3. 위생학자 4. 독극물학자 5. 정신건강 전문가 6. 피해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판정위원회는 산하에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제 3항)	재량규정
		판정위원회 및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4항)	
6	안 제19조(요양급여)	요양급여는 피인정자에게 지급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피해의 료수첩을 제시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 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함 (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20조(요양생활 수당)	요양생활수당은 피인정자에게 지급함(제1항) 요양생활수당은 요양급여 외에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8	안 제21조(장의비 및 간병비)	장의비는 피인정자가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함(제1항) 장의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함(제1항) 1.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2.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3. 생활화학용품피해자로서 이 법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특별유족조위금의 금액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의 치료에 드는 비용, 제13조제5항에 따른 구제급여액 및 제20조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특별장의비의 금액은 제21조에 따른 장의비의 금액으로 함(제3항)	의무규정
10	안 제25조(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가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생활화학용품질병으로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의 합계액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피인정자의 사망 당시 피인정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에서 위의 합계액을 뺀 금액을 구제급여조정금으로 지급함(제1항)	의무규정
11	안 제32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함(제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2. 제38조에 따른 생활화학용품피해구제부담금 3. 제28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금 4.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금품, 그 밖의 재산 5. 기금운용 수익금 6. 적립금 7.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8. 차입금 9. 그 밖의 수익금 정부는 구제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 출연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음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42조(생활화학 용품질병피해구제 심 사위원회)	제41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 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 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제3항)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등 생활화학용 품질병 관련 분야 전문 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무규정
13	안 제45조(생활화학 용품질병피해구제 재 심사위원회)	제44조에 따른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환경 부 소속으로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함(제2항)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되고, 재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함(제3항) 1.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등 생활화학용 품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10년 이상 실무 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손해사정사 등 보험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실무에 종 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의무규정

안 제9조(구제급여의 종류)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요양급여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4	안 제51조(조사 및 지원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할 수 있음(제1항)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화학용품질병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신고센터로 지정하고, 생활화학용품질병 조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음(제3항)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전문요양기관 2. 「환경보건법」 제26조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제3항에 따른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신고센터의 지정 방법·절차, 지원조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제5항)	재량규정
15	안 제5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 생활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2항)	의무규정

-
2. 요양생활수당
 3. 장의비
 4.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5. 구제급여조정금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생활화학용품의 안전관리와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	안 제4조(피해자단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자와 유족이 피해자단체를 구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경우, 국가는 피해자단체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라 신고할 피해자단체의 수를 알 수 없고 제정안이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알 수 없음 - 환경부에 따르면, 유사사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의 경우 총 23개의 피해자단체가 있으나 지원 사례는 현재까지 없음
3	안 제10조(구제급여의 지급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생활화학용품 피해자의 수와 질병의 종류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음 - 환경부에 따르면, 유사사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의 경우 피해인정 5,810명, 구제급여 1,819 억원이 지급되었음('24.9.30.기준) [표] 연도별 피해인정 및 지원 현황(누적)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24.9
인정자 수	534	2,576	2,856	4,114	4,274	4,572	5,667	5,810
지원 현황	8,324	26,355	50,588	77,970	112,114	125,777	159,608	181,949

자료: 환경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4	안 제12조(생활화학용품피해인정 신청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장래에 발생할 생활화학용품피해자의 수와 질병의 종류, 피해인정 신청 건수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 피해구제의 경우 「석면피해구제법」에 근거하여 석면 피해자들에게 석면 수첩을 발급 중 (단위: 건, 백만원) <table> <tr> <th>구 분</th> <th>‘20</th> <th>‘21</th> <th>‘22</th> <th>‘23</th> <th>‘24.9</th> </tr> <tr> <td>석면수첩 발급</td> <td>784</td> <td>1,118</td> <td>1,242</td> <td>1,159</td> <td>787</td> </tr> <tr> <td>소요비용</td> <td>1.5</td> <td>2.2</td> <td>2.4</td> <td>2.3</td> <td>1.5</td> </tr> </table> 주: 석면수첩 발급비용은 건당 2천원 자료: 환경부	구 분	‘20	‘21	‘22	‘23	‘24.9	석면수첩 발급	784	1,118	1,242	1,159	787	소요비용	1.5	2.2	2.4	2.3	1.5
구 분	‘20	‘21	‘22	‘23	‘24.9																
석면수첩 발급	784	1,118	1,242	1,159	787																
소요비용	1.5	2.2	2.4	2.3	1.5																
5	안 제14조(생활화학용품피해판정위원회)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6	안 제19조(요양급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장래에 발생할 생활화학용품피해자의 수와 질병의 종류 등을 현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어,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간병비·특별유족조위금·특별장의비·구제급여조정금 등의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를 추계할 수 없음																		
7	안 제20조(요양생활수당)	×																			
8	안 제21조(장의비 및 간병비)	×																			
9	안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																			
10	안 제25조(구제급여조정금)	×																			
11	안 제32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기금)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구제급여 지급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에 출연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구제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 등을 알 수 없어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적절한 출연 규모 등을 알 수 없음 - 환경부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출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출연금은 '24년 예산 기준으로 6백만원임('22. 3백만원, '23. 3백만원, '24. 6백만원으로 현재까지 12백만원 출연)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2	안 제42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3	안 제45조(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14	안 제51조(조사 및 지원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용품질병의 발생 또는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자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고, 의료기관을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신고센터로 지정 및 지원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생활화학용품피해자의 수와 질병의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현 시점에서는 조사 및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15	안 제53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피해자와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대상자 수 등 심리상담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 환경부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의 경우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 건강관리 지원(콜링유 서비스)을 하고 있음 (단위: 명, 백만원) <table><tr><th>구 분</th><th>2020</th><th>2021</th><th>2022</th><th>2023</th><th>2024</th></tr><tr><td>건강관리지원</td><td>49</td><td>103</td><td>108</td><td>146</td><td>173</td></tr><tr><td>소요비용</td><td>40</td><td>150</td><td>115</td><td>151</td><td>120</td></tr></table> 자료: 환경부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강관리지원	49	103	108	146	173	소요비용	40	150	115	151	120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건강관리지원	49	103	108	146	173																
소요비용	40	150	115	151	120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14조의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안 제42조의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안 제45조의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 등 환경피해 구제 관련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2024년 회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이 15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연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²⁾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환경피해 구제 관련 유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단위: 명, 회)

구 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석면피해판정위원회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위원회
위원 총원	15명	15명	15명
민간위원 수	11명	15명	15명
회의개최 횟수 (‘24.)	5회	12회	10회

자료: 환경부

-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환경피해 구제 관련 유사 위원회의 구성 및 2024년 회의 운영 현황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이 10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연 6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2)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생활화학용품질병 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므로,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이 10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연 3회 개최하는 것으로 하며,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4조)
 - 제정안에 따라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2억 2,5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4,500만원)
 - 민간 위원은 15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10회로 가정함

[표 3]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화학용품피해 판정위원회 구성·운영	45	45	45	45	45	225	45

주: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안 제42조)

- 제정안에 따라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0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1,800만원)
 - 민간 위원은 10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6회로 가정함

[표 4]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18	18	18	18	18	90	18

주: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안 제42조)

- 제정안에 따라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500만원으로 추계(연평균 900만원)
 - 민간 위원은 10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3회로 가정함

[표 5]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생활화학용품질병피해 구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9	9	9	9	9	45	9

주: 위원회의 실제 민간위원 수, 회의개최 횟수 및 부대경비 소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제정안 중 기술적으로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현황³⁾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 추진 경과

- 원인미상의 폐손상 환자가 발생('06)하면서, 정부(질병관리본부)의 원인 조사 착수('08~) → 가슴기살균제를 원인으로 규명(복지부, '11.8월)
- 가슴기살균제 판매중단 권고 및 제품 수거명령 발동(복지부, '11.11월), 자율안전확인 신고(KC마크) 취소(산업부, '11.11월)
- 건강피해 접수* 및 의료비·장례비 지원** 개시(환경부, '14.7월~)
 - * 1차(일본): '11.11~'13.6, 2차(이후 환경부): '14.4~'14.10, 3차: '15.2~'15.12, 4차(상시): '16.5~
 - ** 「환정보건법」에 근거하여, 가해기업에 대한 구상 전제로 지원
- 「가슴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하“특별법”) 제정('17.8)으로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구제급여 지급
 - ⇒ 특별법 개정('19.2, '20.9)으로 피해구제 범위 확대* 및 구제급여 상향**
 - * (당초) 폐질환, 천식 등 질환별 피해자 인정 → (확대) 개인별로 종합적인 피해 인정
 - ** 요양생활 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지급액 상향, 장해급여 신설 등

□ 피해구제 현황

- (피해구제)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유족에게 요양급여(치료비)·요양생활수당·간병비·장해급여 및 유족조위금 등 지급 중
- (통계) 2011년 이후 총 7,969명 신청자 중 5,810명 피해 인정('24.9.30 기준)

[표] 연도별 피해인정 및 지원 현황(누적)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17	'18	'19	'20	'21	'22	'23	'24.9.
인정자 수	534	2,576	2,856	4,114	4,274	4,572	5,667	5,810
지원 현황	8,324	26,355	50,588	77,970	112,114	125,777	159,608	181,949

자료: 환경부

3) 환경부 제출자료